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8
----------	-----

제출년월일 : 2000. .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정보화사회의 발달로 대부분 물품들이 새로운 장비와의 호환성 결여, 단종등으로 부속품 공급의 중단으로 인해 불용품을 필요기관이 없어 소요조회시 행정력이 낭비되고
- 불용품 감정대상 범위를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매입희망자가 없는데도 감정을 해야 함으로써 감정수수료만 낭비되는 경향을 해소하고자 소요조회 및 감정가액 기준을 상향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불용품 소요조회대상(제16조제3항)
 - 동일 광역시·도(시·구·군·자치구 포함)와 정부각부처, 타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가격기준)이 10백만원이상인 경우
 - 동일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가격 기준)이 5백만원이상 10백만원 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 ⇒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가격 기준)이 2천만원이상인 경우

○ 불용물품 처분시 물품의 감정가액 기준조정(제17조제4항)

- 불용품 감정대상 :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

3. 의안전문 : 따로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따로붙임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 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7조제4항 단서중 “단가 1천만원이상인”을 “단가 2천만원 이상인”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 ①~②(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기준은 다음 각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동일 광역시(시·군·자치구 포함)와 정부각부처, 타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 가격기준)이 10백만원이상인 경우</p> <p>2. 동일광역시(시·군·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미만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p>	<p>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u>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 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③(생략)</p> <p>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p>	<p>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③(현행과 같음)</p> <p>④ ----- ----- ----- -----단가 2천 만원이상인----- ----- ----- -----</p>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00조(물품의 처분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또는 처분 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③물품의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3조(불용결정)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물품의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불용결정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3. 물품의 사용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여부
6. 처분방법

□ 개정준칙 : 별첨

“2000년은 지방공기업법 시행30주년의 해”
행 정 자 치 부

우110-760/종로구세종로77-6정부중앙청사1310호/전화3703-4960(행)4960/전송3703-5550
공기업과 과 장 송영곤 서기관 김두수 담 당 최한교

문서번호 공기 13330 - 560

시행일자 2000. 8. 8(5년)

경 유 :

수 신 : 수신처참조

참 조 :

선 결	처 리 과	3227	지 시	
접 수	일 자 시 각	2000. 8. 09	결 재	최한교
	번 호	3227		
	처 리 과	계 약 실 무	공 람	최한교
	담 당 자			최한교
	심 사 자		심 사 일	최한교

제 목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5. 1부터 6.30
까지 실시한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장부 미등재 물품 과다와 불용대상
물품의 장기간 미처분등 물품관리상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불임과 같이 시달하니 재물조정과 불용처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
다.

불 임 :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개선대책. 끝.

행 정 자 치 부 장



수신처 : 니01~07, 10~18(참조 : 물품관리담당과장)

【별표 1】

○○시·도, 시·군·구 물품관리조례중 개정 조례

○○시·도, 시·군·구 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백만원이상인 경우

제17조제4항중 “단가 1천만원이상인”을 “단가 2천만원이상인”으로 한다.

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②(생략)</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동일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이상인 경우</p> <p>2. 동일광역시·도(시·군·자치구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미만 5백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p>	<p>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②(현행과 같음)</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백만원이상인 경우</p>
<p>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③(생략)</p> <p>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 9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p>	<p>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③(현행과 같음)</p> <p>④----- ----- ----- ----- ----- ----- ----- ----- ----- -----</p> <p>단가 2천만원이상인</p>